

목 차

	회 순	1
제62차 정기총회	회원현황	2
	제61차 정기총회 결과서	3
	2022년도 경과보고	4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	5
	2022년도 감사보고	15
	부의안건	16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17
	별첨 2022년도 수입 내역	19
	제2호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2
	제3호의안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3
	제4호의안 제31대 회장 추대의 건	26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감사 1인)	26
	제6호의안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26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정기총회	2022년도 감사보고	29
	부의안건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30
	제2호의안 2023년도 운영(안) 승인의 건	31
	별첨 부산건축가회 후원금 내역 (배당수익)	31
제16회 부산건축상	시상내용	32
부록	I 역대회장단	33
	II 조직도	34
	III 임원명단	35
	IV 회원명단	36
	V 한국건축가협회 정관	42
	VI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48
	VII 부산건축가회 운영지침	52
	VIII 부산건축가회 선거관리규정	57
	IX 부산건축상 규정	58

회 순

제62차 정기총회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 묵념

개회사

제61차 정기총회 결과서 승인

2022년도 경과보고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

2022년도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제31대 회장 추대의 건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감사 1인)

제6호의안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정기총회

2022년도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23년도 운영(안) 승인의 건

제16회 부산건축상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시상식 공로상 · 올해의건축가상 · 신인건축가상

부산광역시 건축문화발전 표창장

공로패

신입회원 소개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 이·취임식

제31대 임원진 소개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회원현황 2023. 2. 3. 현재

제61차 정기총회 262

2022년 전입회원 1

2022년 제적회원 3

2022년 신입회원 11

현재 회원 수 271

2022년도 전입회원

NO	회원번호	성명	근무처	연락처	비고
1	5193	백승한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010-3585-0583	강원

2022년도 제적회원

NO	회원번호	성명	근무처	사유	비고
1	1684	박진수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망	
2	5281	김성수	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사망	
3	756	장기수	동인 건축사사무소	사망	

2022년도 신입회원

NO	회원번호	성명	근무처	연락처	비고
61차	5115	신주영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010-9554-8175	
61차	5126	윤정아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10-2949-4209	
61차	5127	최새벌	건축사사무소 1458	010-7339-0124	
61차	5274	허진우	디바이어스	010-3648-1240	
1	5281	김성수	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010-5311-6551	
2	5282	황은혜	eh건축사사무소	010-3927-0347	
3	5334	정승록	와이건축사사무소	010-9880-8115	
4	5335	허정은	문현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10-7703-1957	
5	5349	조용의	일상건축디자인그룹	010-4844-3188	
6	5350	김민수	건축사사무소 다룸	010-8515-0011	
7	5351	김동현	짓다 건축사사무소	010-3077-8115	
8	5361	고수정	건축사사무소 라솔트	010-4029-6790	
9	5362	김경희	희가 건축사사무소	010-2578-9096	
10	5363	이은미	(주)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010-6681-3370	
11	5364	조선애	(주)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010-6358-0053	

제61차 정기총회 결과서

- 일시 2022. 2. 17.(수) 14:00 ~ 15:30
- 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출석회원
 - 재석회원 262명
 - 출석회원 75명 (42명 참석, 33명 위임장 대체)
 - 불참회원 187명

제61차 부산건축가회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개회사 조서영 회장
- 격려사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 제60차 정기총회 회의결과 승인
- 2021년도 경과 및 주요사업보고
- 감사보고 오철호 감사
- 의안채택 및 심의 조서영 의장
 - 제1호의안 2021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승인
 - 제2호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승인
60주년 기념행사 사업계획 설명 기념행사 관련 창립일 또는 해당 월 개최 건의
 - 제3호의안 2022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승인
 - 제4호의안 임원개선(수석부회장 1인) 이봉두 회원 단독출마, 거수로 만장일치 선출
임원개선(감사 1인) 후보 불출마로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회장단에서 이채근 감사 연임 요청, 수락, 만장일치로 선출
 - 제5호의안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없음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정기총회

- 의안채택 및 심의 조서영 이사장
 - 제1호의안 2021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승인
 - 제2호의안 2022년도 운영(안) 승인의 건 승인
- 공로패 전달 제29대 회장 조승구 (이병욱 회원 대리수상)

제15회 부산건축상 시상식

- 공로상 허동윤 / 김청룡 / 정한식
- 올해의건축가상 이채근
- 신인건축가상 조윤경 / 김동현
- 신입회원 소개 (2019년 ~ 2022년 신입회원)
- 기념촬영
- 폐회 15시 30분

2022년도 경과보고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2022. 1. 18.(화) ~ 10. 30.(일)

등록접수	2022. 4. 4.(월) - 6. 3.(금)	접수 404 한국 377 중국 27 일본 0
1차 작품제출	2022. 7. 4.(월) - 7. 8.(금)	제출 315 한국 291 중국 24 일본 0
1차 작품심사	2022. 7. 13.(수)	부산건축가회 사무국
1차 결과발표	2022. 7. 15.(금)	합격 126 한국 114 중국 12 일본 0
2차 작품제출	2022. 8. 29.(월) - 9. 2.(금)	제출 100 한국 92 중국 8 일본 0
2차 작품심사	2022. 9. 6.(화)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2차 결과발표	2022. 9. 8.(목)	3차 심사 9 장려상 10 입선 81
3차 공개심사	2022. 9. 27.(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3차 결과발표	2022. 9. 27.(화)	대상 1 우수상 2 특선 6
작품전시 I	2022. 10. 13.(목) - 10. 17.(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작품전시 II	2022. 10. 26.(수) - 10. 30.(일)	신세계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제14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제36회 청소년예술제 2022. 5. 22.(일)

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연습실
주제	운동장프로젝트 -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운동장 풍경
내용	건축특강 · 건축모형 제작 · 발표
참가 / 시상	10개교 접수 14명 참가10명 /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입선 4

젊은건축가위원회 전시 objet展

작품전시 I	갈매랑 축제 objet展	2022. 9. 22.(목) - 9. 29.(목)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작품전시 II	2022 부산건축제 objet展	2022. 10. 26.(수) - 10. 30.(일)	신세계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제12회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2022. 9. 25.(일) - 9. 28.(수)

장소	경동제이드 상가 3F
주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메시지 - 미55보급창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다
내용	건축특강 · 워크숍 · 발표 등
참가	국내 20명

제23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제60회 부산예술제 2022. 10. 13.(목) - 10. 17.(일)

장소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접수 / 시상	9개국 27명 71작품 / 1등 1작 2등 2작 3등 3작 입선 29작		
작품전시	2022. 10. 13.(목) - 10. 17.(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건축가의 顔’	회원 64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2022. 10. 28.(금)

장소	APEC 누리마루 2F 회의실
슬로건	‘열정의 건축가’
비전선포	ARCH (Action · Reviving · Creative · Honorable)
특별공로상	오철호 이병욱 이인미 강영자 강주연 이장민 정희웅 김정기 안현조

건축탐방 2022. 12. 17.(토)

답사지	(화성) 남양성모성지 _ 마리오 보타
	(서울) LG아트센터 서울 _ 안도 다다오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

목 차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6
제36회 청소년예술제 제14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	9
젊은건축가위원회 objet展	10
제12회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11
제60회 부산예술제 제23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12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13
건축탐방	14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부문

주제 공공성의 재구현 - 변화의 시점에서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

Reconfiguration of Publicity - Rethinking publicity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

주제문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닌 존재이다. 사회라 함은 나와 너, 그리고 '모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생성되는 관계의 원천이 되는 공간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문명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나'라는 자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과 장소의 의미는 '공공성'이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공성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원초적인 개념이자, 추상성과 구체성의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축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진 공공성은 불특정한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장소 등을 지칭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공공성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을 지탱하는 기본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소통, 공유 등 많은 개념들이 공공성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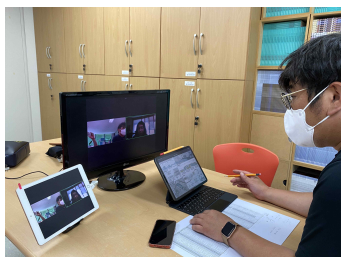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공공성의 의미는 그 자체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공공성은 단순히 접촉을 전제로 한 '만남'의 의미를 넘어,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으로 온라인-쇼핑, 강의, 모임 등은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 있으며, SNS를 중심으로 공간은 공공성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은 위의 내용처럼, 우리의 현실과 부합될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공모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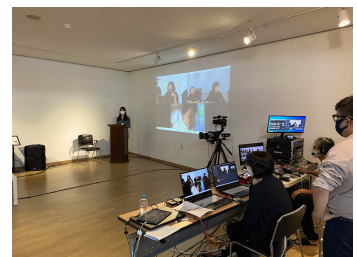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주제알림	2022. 3. 9.(수)	홈페이지
개최공고	2022. 3. 9 (수)	홈페이지
등록접수	2022. 4. 4.(월) - 6. 3.(금)	접수 404 한국 377 중국 27 일본 0
1차 작품제출	2022. 7. 4.(월) - 7. 8.(금)	제출 315 한국 291 중국 24 일본 0
1차 작품심사	2022. 7. 13.(수)	부산건축가회 사무국 심사위원 오철호 · 박희영 · 조윤경
1차 결과발표	2022. 7. 15.(금)	합격 126 한국 114 중국 12 일본 0
2차 작품제출	2022. 8. 29.(월) - 9. 2.(금)	제출 100 한국 92 중국 8 일본 0
2차 작품심사	2022. 9. 6.(화)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심사위원 이상혁 · Gao Lun · Kutsuki Yoshitsuna
2차 결과발표	2022. 9. 8.(목)	3차 심사 9 장려상 10 입선 81
3차 공개심사	2022. 9. 27.(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심사위원 이상혁 · Zhang Jian · Asako Yamamoto
3차 결과발표	2022. 9. 27.(화)	대상 1 우수상 2 특선 6
작품전시 I	2022. 10. 13.(목) - 10. 17.(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예술제 기간)
작품전시 II	2022. 10. 26.(수) - 10. 30.(일)	신세계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부산건축제 기간)



<1차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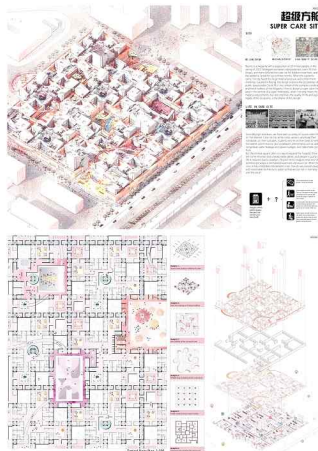
<2차 심사>



<3차 심사>

공모전 결과

- 대상 1명 부산광역시장상
Guo Jiaqi Tianji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 Planning / SUPER CARE SITE
- 우수상 2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중국텐진건축학회 회장상,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지부장상
한시훈 동의대학교 / Horizontal Citizen Platform
Wan Yuchen Tianjin Renai College / CONTINUATION OF LIFE
- 특선 6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중국텐진건축학회 회장상,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지부장상
김보미 동의대학교 / LINEAR EDGE
김동경 부경대학교 / The Way of Memorizing Metropolis
공영인 동의대학교 / Negotiation between Society and Us
이고은 충북대학교 / CO-CO-FARM
김상욱 동명대학교 / Urban Green Promenade Housing, Cheonggyecheon River
김성우 부경대학교 / HILLING - UP
- 장려상 10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 입선 81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대 상

Guo Jiaqi SUPER CARE SITE



우수상

한시훈 Horizontal Citizen Platform



우수상

Wan Yuchen CONTINUATION OF LIFE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장민	인제대학교
운영간사	박희영	건축사사무소 다름
운영위원	가나다순	
	김근식	동서대학교
	김민석	부경대학교
	김종국	경성대학교
	백지웅	신라대학교
	성이용	동아대학교
	오광석	한국해양대학교
	오철호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윤종국	동명대학교
	이태문	동의대학교
	정재훈	부산대학교
	조윤경	짓다 건축사사무소
	허정은	문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심사위원

일반국제공모부문 1차 심사위원	오철호 · 박희영 · 조윤경
일반국제공모부문 2차 심사위원	이상혁 · Gao Lun · Kutsuki Yoshitsuna
일반국제공모부문 3차 심사위원	이상혁 · Zhang Jian · Asako Yamamoto



완공건축물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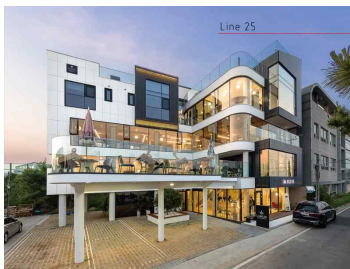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은 최근 5년간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및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 건축물을 널리 알림으로서 건축가들의 건축철학과 우수건축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출 작품 중, 수상한 작품은 BEST AWARD를 수상하게 되며, 건축가와 시공자에게는 상패, 건축주에게는 영구히 부착할 수 있는 명패를 수여합니다.

공모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개최공고	2022. 7. 1 (금)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2. 7. 11.(월) - 8. 26.(금)	신청서 이메일(kiabb@hanmail.net) 제출
작품제출	2022. 8. 29.(월) - 9. 2.(금)	패널, 작품자료 등 제출
작품심사	2022. 9. 27.(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결과발표	2022. 9. 27.(화)	홈페이지
작품전시	2022. 10. 13.(목) - 10. 17.(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예술제 기간)

공모결과 가나다순

작품명	건축가	사무소명	건축주	시공사
LINE 25	강기표	건축사사무소 아체ANP	소연수	푸른담벼락 종합건설(주)
트루바이 생림 리모델링	강대화	건축사사무소 토탈	안외희	고강종합건설(주)
WES	이봉두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성욱	(주)센티움종합건설



BEST AWARD
강기표 LINE 25

경상남도 김해시 식만로 354-63



BEST AWARD
강대화 트루바이 생림 리모델링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462번길 8



BEST AWARD
이봉두 WES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안길 29

제36회 청소년예술제 제14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주제 운동장 프로젝트 -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운동장 풍경

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개최공고	2022. 4. 1.(금)	홈페이지
참가접수	2022. 4. 4.(월) - 6. 3.(금)	10개교 접수 14 참가 10
청소년건축상상마당	2022. 5. 2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회의실 건축특강 강영주 (건축사사무소 마운) 심사위원 강영주 허진우 정동원 박은정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입선 4

결과

- 대상 1명 부산광역시장상 차하영 센텀여자고등학교
- 최우수상 2명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박주명 한일고등학교 안세훈 동천고등학교
- 우수상 2명 부산예총회장상 우수상 1명 부산건축가회장상 정현도 금정고등학교 윤승범 동천고등학교 박찬우 동천고등학교
- 입선 4명 부산건축가회장상



<특강>



<모형제작>



<발표>



<심사>



<시상식>



<단체사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정희웅	동서대학교
운영위원	정동원	건축사사무소 기공재
	박은정	이공공공플러스㈜
	허진우	디바이어스

심사위원

강영주	건축사사무소 마운
허진우	디바이어스
정동원	건축사사무소 기공재
박은정	이공공공플러스㈜



젊은건축가위원회 objet展

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전시 I	2022. 9. 22.(목) - 9. 29.(목)	갈매랑 축제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전시 II	2022. 10. 26.(수) - 10. 30.(일)	부산건축제 신세계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참가자

이름	소속	작품명	비고
임성훈	동명대학교	• 건축적인 것에 대하여 • 소박한 사물의 이야기	비평
강영주	건축사사무소 마운	• OBJETOWER FOR CAT_mockup	
김주열	공간 더하기 건축사사무소	• 내일의 전시 “지금의 감성으로 내일의 나를 전시하다.”	
변선화	이든 건축사사무소	• 건축가의 가방 - What's in your bag?!	
신주영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 장(櫝) 건축 자재를 활용한 제작가구	
정재우 김용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위고공간	• 사물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things	
유창욱 여창호	라인캘리토닉 건축사사무소 그린지팩토리	• 새로운 비판적 연결 (DE-LINKING)	
조윤경 김동현	짓다 건축사사무소	• 몽글몽글 펜던트	
조정훈	건축사사무소 아이익	• 콘크리트 & 이형철근 오브제 시리즈	
최미예	건축사사무소 소슬	• Universe (우주)	
최새벌	건축사사무소 1458	• 낙수효과 (落水效果)	
황은혜	eh 건축사사무소	• 꽃담무늬 항아리 - 궁궐의 담장이 항아리가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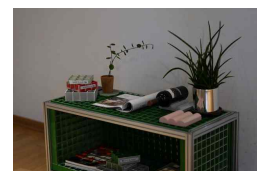
<강영주>



<김주열>



<변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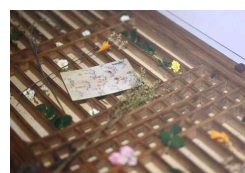
<신주영>



<정재우 · 김용운>



<유창욱>



<여창호>



<조윤경 · 김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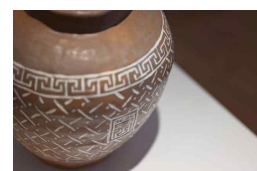
<조정훈>



<최미예>



<최새벌>



<황은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조정훈	건축사사무소 아이익
운영위원	김주열	공간 더하기 건축사사무소
	조윤경	짓다 건축사사무소



제12회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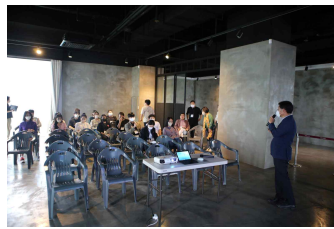
주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메시지 - 미55보급창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다

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개최공고	2022. 8. 16.(화)	홈페이지
참가접수	2022. 8. 22.(월) - 8. 26.(금)	e-mail
특강 1	2022. 9. 25.(일)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특강 2	2022. 9. 28.(수)	이기철 (아키텍케이)
워크숍	2022. 9. 25.(일) - 9. 28.(수)	경동제이드 상가 3층 4인/1조 5조 참가자 20 부산 10 서울 7 경남 2 울산 1 팀별작업 / 발표 / 요트투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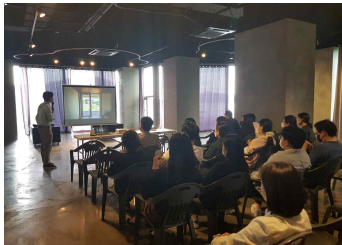
<오리엔테이션>



<특강1>



<워크숍>



<특강2>



<발표>



<요트투어>



A

비움과 이음



B

이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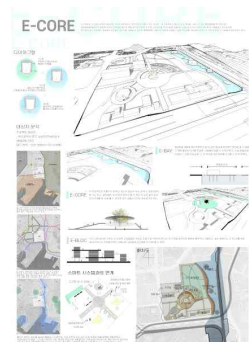
C

POINT



D

PLAY GROUND
TO SKY BRIDGE



E

E-CORE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기	경동건설(주)	운영위원	남건수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간사	고수정	건축사사무소 라솔트		하호진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이윤희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허진우	디바이어스

제60회 부산예술제

제23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주제 사람과 공간 HUMANS & SPACE

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개최공고	2022. 8. 19.(금)	홈페이지 / Facebook / instagram
참가접수	2022. 8. 24.(수) - 9. 23.(금)	참가 9개국 27명 71작
1차 심사	2022. 9. 30.(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심사위원 이인미 이주영 허진우 강영주
본 심사	2022. 9. 30.(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심사위원 김홍희 강대화 이길임 금상 1 은상 2 동상 3 입선 29
전시	2022. 10. 13.(목) - 10. 17.(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수상작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부문 수상작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작 건축가의 顔



Gold Prize
Mithail Afrige Chowdhury
Pigeon in Cage



Silver Prize
김민석
Curiosity



Silver Prize
Rajesh Dhar
Light and shadow



Bronze Prize
Muhammad Amdad Hossain
Fatigue Sleep On The Boats



Bronze Prize
강순덕
where it ends



Bronze Prize
Charles Saswinanto
Gwangalli Bridge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화철	동의과학대학교
운영위원	이인미	비온후
	이주영	이공공구공플러스㈜
	허진우	디바이어스
	강영주	건축사사무소 마온

심사위원

김홍희	사진작가
강대화	건축사사무소 토탈
이길임	동명대학교
이인미	비온후
이주영	이공공구공플러스㈜
허진우	디바이어스
강영주	건축사사무소 마온



창립60주년 특별기획
〈건축가의 顔〉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경과

구분	일정	장소 및 경과
발족	2021. 11. 23.(화)	부산건축가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TFT 발족
자체평가	분과장 표응석 / 운영위원 이윤희 김용운 안현조 - 설문조사 / 간담회 / 비전설정 등	
홍보	분과장 강주연 / 운영위원 조현민 배현숙 신성호 - KNN 캠페인 광고 / 행사장 디자인 등	
행사준비	분과장 박미경 / 운영위원 손숙희 김두진 강영자 윤정아 최새별 - 행사준비	
인터뷰/자료	분과장 조정훈 / 운영위원 김주열 조윤경 최미예 신주영 강영주 - 인터뷰 / 대학생 간담회 등	
영상	분과장 백지웅 / 운영위원 김주열 조윤경 최미예 신주영 강영주 - 인터뷰 영상 / 행사 영상 촬영 등	
기념행사	2022. 10. 28.(금)	APEC 누리마루하우스 2층 회의실 포토존 촬영 / 공연 / 인터뷰 영상 / 비전선포식 / 특별공로상 시상 등



〈자체평가 간담회〉



〈KNN 캠페인〉



〈인터뷰〉



〈포토존 촬영〉



〈비전선포식〉



〈특별공로상〉



〈케이크 커팅식〉



〈단체사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봉두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자문위원	강대화	건축사사무소 토탈
	허동운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호국	(주)타오종합건축사사무소
	손숙희	(주)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조승구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분과위원장	표응석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강주연	(주)협성건설
	박미경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조정훈	건축사사무소 아익
	백지웅	신라대학교 건축학과

부산건축가회 60년
열정의 건축가

슬로건



부산건축가회 VISION

건축탐방

2022 국내건축탐방

일 시 | 2022. 12. 10. (토)

답사지 | (화성) 남양성모성지 Mario Botta
(서울) LG아트센터 서울 Ando Tadao



(화성) 남양성모성지



(서울) LG아트센터 서울

감사보고

2022년도 감사보고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제8조4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7일에 실시한 2022회계연도의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회계부분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장내역과 현금 보관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수입은 이월금, 회비, 보조금, 기타수익 등 총 202,002,853원이며, 그 중 196,302,674원이 집행되었고, 그 잔액 5,700,179원은 차기 이월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수입은 이월금, 접수비 등 총 59,472,392원이며, 그 중 53,852,214원이 집행되었고, 그 잔액 5,620,178원은 차기 이월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2) 회원회비 납부는 신입회원 회비 수입이 예산대비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회비 납부 독려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사업부분

- 1) 6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발표, 기록영상물 제작, 캠페인 광고 등의 기획 및 집행을 통해 창립6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부산국제건축대전은 온라인을 통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젊은 건축가 전시 등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대면의 일상화가 예견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이 되도록 고려하고 대시민 홍보 등의 방법들도 논의하길 바랍니다.

3. 기타

홈페이지에 부산건축상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기록 보존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23년 1월 17일

감 사 : 오 철 호 (인)

감 사 : 이 채 근 (인)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제62차 정기총회

부의안건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별첨 2022년도 수입 내역

제2호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제31대 회장 추대의 건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감사 1인)

제6호의안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22년도 결 산 총 괄 표

자 2022. 01. 01.

지 2022. 12. 31.

일반회계 총괄표

수입부		지출부		비고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21년도 이월금	7,390,748	회의비	3,706,580	
회비	21,460,000	사무비	2,432,470	
후원금	116,450,000	사무실	22,055,190	
보조금	50,800,000	운영비	16,132,440	
기타	5,902,105	사업비	132,125,994	
		기타	19,850,000	
		지출합계	196,302,674	
		차기이월금	5,700,179	
총계	202,002,853	총계	202,002,853	
2021년도 수입결산액	71,642,600	2021년도 지출결산액	64,251,852	7,390,748

특별회계(건축대전) 총괄표

수입부		지출부		비고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21년도 이월금	3,021,110	시상금	26,925,306	
시보조금	22,000,000	대전준비금	1,128,500	
기타	34,451,282	행사비	24,272,988	
		기타	1,525,420	
		지출합계	53,852,214	
		차기이월금	5,620,178	
총계	59,472,392	총계	59,472,392	
2021년도 수입결산액	21,552,595	2021년도 지출결산액	18,531,485	3,021,110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수입부>

관		수입예산액 (1)	수입액 (2)	증감액 (2)-(1)	달성율 (%)	비고
항	목					
2021년도 이월금		7,390,748	7,390,748		100.00%	
연회비	2022년도 연회비	2,400,000	2,840,000	440,000	118.33%	
	2021년도 연회비	3,600,000	2,900,000	- 700,000	80.56%	
	평생회비	7,200,000	12,600,000	5,400,000	175.00%	
	입회비 및 연회비	1,680,000	3,120,000	1,440,000	185.71%	
	소 계	14,880,000	21,460,000	6,580,000	144.22%	
후원금	회원찬조금	15,000,000	44,000,000	29,000,000	293.33%	
	협찬	50,000,000	72,450,000	22,450,000	144.90%	
	소 계	65,000,000	116,450,000	51,450,000	179.15%	
보조금	부산예술제	17,500,000	17,400,000	- 100,000	99.43%	
	청소년예술제	6,900,000	6,900,000	0	100.00%	
	건축문화연구센터	35,000,000	24,000,000	- 11,000,000	68.57%	
	부산예총	2,500,000	2,500,000	0	100.00%	
	소 계	61,900,000	50,800,000	- 11,100,000	82.07%	
기타	잡수입	800,000	5,900,000	5,100,000	737.50%	
	이자수입 등	29,252	2,105	- 27,147	7.20%	
	소 계	829,252	5,902,105	5,072,853	711.74%	
총 계		150,000,000	202,002,853	52,002,853	134.67%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2022년도 수입 내역>

내용	산출기초		합계	비고
연회비	2020년	4명*100,000원+7명*120,000원	1,240,000	
	2021년	7명*100,000원+8명*120,000원	1,660,000	
	2022년	26명*100,000원+2명*120,000원	2,840,000	
평생회비	7명*1,800,000원		12,600,000	
신입회비	2022년	12명*240,000원+2명*120,000원	3,120,000	
회원찬조금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5,000,000	
	신호국 (부산문화상)		6,000,000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000,000	
	(주)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000,000	
	(주)서원건축사사무소		5,000,000	
	(주)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5,000,000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00,000	
	(주)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1,000,000	
	(주)신도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00,000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	
	(주)리한건축사사무소		2,000,000	
	김정화건축사사무소		2,000,000	
협찬	삼미D&C (백송그룹)		20,000,000	
	(주)협성건설		10,000,000	
	(주)동원개발		10,000,000	
	(주)대성문		5,000,000	
	경동건설(주)		20,000,000	
	(주)건양산업개발		1,000,000	
	(주)우성종합건설		6,450,000	
부산예술제	부산광역시 보조금		14,000,000	
	부산은행 보조금		3,400,000	
청소년예술제	부산광역시 보조금		4,300,0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조금		2,000,000	
	부산은행 보조금		300,000	
	대산재단 보조금		300,000	
건축문화연구센터	건축문화연구센터		10,000,000	
	건축문화연구센터		10,000,000	
	건축문화연구센터		4,000,000	
기타수입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2,500,000	
	워크숍 참가비		4,800,000	
	건축탐방 참가비		1,100,000	
이자수입	이자수입		2,105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지출부>

항	관	지출예산액 (1)	지출액 (2)	증감액 (2)-(1)	집행율 (%)	비고
	목					
회의비	총회	3,500,000	3,219,460	- 280,540	91.98%	
	이사회 회의비	1,000,000	487,120	- 512,880	48.71%	
	소 계	4,500,000	3,706,580	- 793,420	82.37%	
운영비	운영위운영비	2,000,000	1,058,100	- 941,900	52.91%	
	건축문화위운영비	500,000	0	- 500,000	0.00%	
	청소년위운영비	500,000	1,587,140	1,087,140	317.43%	
	건축예술위운영비	500,000	646,400	146,400	129.28%	
	열린건축위운영비	2,000,000	0	- 2,000,000	0.00%	
	홍보위운영비	1,500,000	274,000	- 1,226,000	18.27%	
	젊은건축가위운영비	8,000,000	7,138,160	- 861,840	89.23%	
	건축상위운영비	3,000,000	2,018,000	- 982,000	67.27%	
	대외협력위원회	2,500,000	1,202,000	- 1,298,000	48.08%	
	국제협력위원회	500,000	0	- 500,000	0.00%	
	60주년위원회	5,000,000	2,208,640	- 2,791,360	44.17%	
	소 계	26,000,000	16,132,440	- 9,867,560	62.05%	
사무비	통신비	1,100,000	1,526,160	426,160	138.74%	
	소모품비	500,000	403,610	- 96,390	80.72%	
	여비	500,000	389,800	- 110,200	77.96%	
	우편비 등	500,000	4,000	- 496,000	0.80%	
	홈페이지	1,000,000	108,900	- 891,000	10.89%	
	소 계	3,600,000	2,432,470	- 1,167,530	67.57%	
사무실	사무국 급여	20,000,000	20,901,000	901,000	104.51%	
	사무실 운영비	1,500,000	1,154,190	- 345,810	76.95%	
	소 계	21,500,000	22,055,190	555,190	102.58%	
사업비	청소년예술제운영비	6,900,000	6,900,000	0	100.00%	
	국제건축도시사진전	17,500,000	17,692,938	192,938	101.10%	
	한중일워크숍운영비	5,000,000	8,848,086	3,848,086	176.96%	
	건축탐방지원	7,500,000	2,326,700	- 5,173,300	31.02%	
	갈매랑축제	2,500,000	2,500,000	0	100.00%	
	60주년기념행사	45,000,000	93,858,270	48,858,270	208.57%	
	소 계	84,400,000	132,125,994	47,725,994	156.55%	
기타	경조사비	3,000,000	10,400,000	7,400,000	346.67%	
	본회회비	4,464,000	7,050,000	2,586,000	157.93%	
	예총회비 등	1,500,000	1,800,000	300,000	120.00%	
	예비비	1,036,000	600,000	- 436,000	57.92%	
	소 계	10,000,000	19,850,000	9,850,000	198.50%	
총 계		150,000,000	196,302,674	46,302,674	130.87%	

2022년도 특별회계 결산서

<수입부>

관		수입예산액 (1)	수입액 (2)	증감액 (2)-(1)	달성율 (%)	비고
항	목					
2021년도 이월금		3,021,110	3,021,110			
시지원금	시지원금	22,000,000	22,000,000	0	100.00%	
	소 계	22,000,000	22,000,000	0	100.00%	
기타	접수비	14,900,000	16,450,000	1,550,000	110.40%	
	특별후원금	10,000,000	18,000,000	8,000,000	180.00%	
	이자 등	78,890	1,282	- 77,608	1.63%	
	소 계	24,978,890	34,451,282	9,472,392	137.92%	
총 계		50,000,000	59,472,392	9,472,392	118.94%	

<지출부>

관		지출예산액 (1)	지출액 (2)	증감액 (2)-(1)	집행율 (%)	비고
항	목					
시상금	일반공모	18,000,000	24,866,106	6,866,106	138.15%	
	완공건축	1,000,000	2,059,200	1,059,200	205.92%	
	소 계	19,000,000	26,925,306	7,925,306	141.71%	
대전 준비금	운영위원회	1,400,000	1,128,500	- 271,500	80.61%	
	소 계	1,400,000	1,128,500	- 271,500	80.61%	
행사비	통번역비	2,000,000	1,543,000	- 457,000	77.15%	
	심사비	4,200,000	2,978,928	- 1,221,072	70.93%	
	초청비	1,000,000	150,000	- 850,000	15.00%	
	인쇄비	1,000,000	3,400,000	2,400,000	340.00%	
	우편비 등	500,000	761,040	261,040	152.21%	
	시상식	400,000	0	- 400,000	0.00%	
	전시장관리	1,000,000	110,020	- 889,980	11.00%	
	인건비	1,500,000	430,000	- 1,070,000	28.67%	
	영상관련	7,000,000	7,200,000	200,000	102.86%	
	작품집제작	8,000,000	7,700,000	- 300,000	96.25%	
	소 계	26,600,000	24,272,988	- 2,327,012	91.25%	
기타	기타	2,000,000	1,525,420	- 474,580	76.27%	
	예비비	1,000,000	0	- 1,000,000	0.00%	
	소 계	3,000,000	1,525,420	- 1,474,580	50.85%	
총 계		50,000,000	53,852,214	3,852,214	107.70%	

제2호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일정	내용	세부내용
2월 3일	제62차 정기총회 제16회 부산건축상	- 일시 2023년 2월 3일(금) 오후 3시 - 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3월 - 9월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 공고 3월 중 1차 등록접수 2023. 4. 3. ~ 6. 2. 1차 작품제출 2023. 7. 4. ~ 7. 8. 17시 1차 심사 2023. 7. 13. 1차 결과발표 2023. 7. 15. 2차 등록접수 2023. 7. 18. ~ 8. 26. 2차 작품제출 2023. 8. 29. ~ 9. 2. 2차 심사 2023. 9. 6. 2차 결과발표 2023. 9. 8. 3차 공개발표 2023. 9. 27. - 시상 미정 - 전시 미정
연중	회원작품연구위원회	3~6월(4회) 9~12월(4회) (예정) - 회원 작품 탐방 등
5월	부산청소년예술제 제15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	- 일정 2023년 5월 13일(토)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회의실 - 주제 미정 - 내용 건축특강, 워크숍, 건축모형 제작
6월 중	춘계건축탐방	미정
6월	갈매랑 축제	- 일정 2023. 6. 16. ~ 6. 18. (예정) - 장소 부산시민공원 - 올해의 건축가상 수상자 전시, 체험행사(부스) - 수상 작가 작품 등
8월 중	해외건축탐방	- 부산·울산·경남 건축학회 동행 - 스페인
5월 - 10월	부산예술제 제24회 국제건축도시사진전 젊은 건축가 전시	- 공고 5월 중 - 전시 2023년 10월 중 - 장소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예정) - 내용 사진전 수상작,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
미정	젊은 건축가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 일정 미정 - 장소 한국 (국내행사) 또는 일본 (국제행사)
11월 중	추계건축탐방	미정
2024. 1월 중	해외건축탐방	2023년 1월 중 - 장소 유럽 - 대전 수상자, 회원, 회원가족 등

제3호의안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입부〉

관		2022 수입예산액 (1)	2023 수입예산액 (2)	증감액 (2)-(1)	비고
항	목				
이월금		7,390,748	5,700,179	- 1,690,569	
연회비	2023년도 연회비	0	2,400,000	2,400,000	
	2022년도 연회비	2,400,000	3,600,000	1,200,000	
	2021년도 연회비	3,600,000	0	- 3,600,000	
	평생회비	7,200,000	5,400,000	- 1,800,000	
	입회비 및 연회비	1,680,000	1,680,000	0	
	소 계	14,880,000	13,080,000	- 1,800,000	
후원금	회원찬조금	15,000,000	20,000,000	5,000,000	
	협찬	50,000,000	35,000,000	- 15,000,000	
	소 계	65,000,000	55,000,000	- 10,000,000	
보조금	부산예술제	17,500,000	17,400,000	- 100,000	
	청소년예술제	6,900,000	6,900,000	0	
	건축문화연구센터	35,000,000	7,000,000	- 28,000,000	
	부산예총	2,500,000	2,500,000	0	
	소 계	61,900,000	33,800,000	- 28,100,000	
기타	잡수입	800,000	3,000,000	2,200,000	
	이자수입 등	29,252	19,821	- 9,431	
	소 계	829,252	3,019,821	2,190,569	
총 계		150,000,000	110,600,000	- 39,400,000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지출부>

항	관	2022 지출예산액 (1)	2023 지출예산액 (2)	증감액 (2)-(1)	비고
	목				
회의비	총회	3,500,000	4,000,000	500,000	
	이사회 회의비	1,000,000	1,500,000	500,000	
	소 계	4,500,000	5,500,000	1,000,000	
운영비	운영위원회운영비	2,000,000	2,000,000	0	
	CA위원회운영비	0	3,500,000	3,500,000	신설
	회원작품연구위원회운영비	0	3,500,000	3,500,000	신설
	젊은건축가위원회운영비	8,000,000	3,000,000	- 5,000,000	부산예술제
	건축예술위원회운영비	500,000	0	- 500,000	삭제
	청소년위원회운영비	500,000	1,000,000	500,000	상상마당
	국제위원회운영비	500,000	1,000,000	500,000	워크숍
	대외협력위원회운영비	2,500,000	3,000,000	500,000	유관단체
	홍보위원회운영비	1,500,000	2,000,000	500,000	
	연구위원회운영비	2,000,000	3,000,000	1,000,000	열린법제도
	건축문화연구위원회운영비	500,000	1,500,000	1,000,000	탐방
	부산건축상위원회운영비	3,000,000	3,000,000	0	
	60주년위원회운영비	5,000,000	0	- 5,000,000	삭제
	소 계	26,000,000	26,500,000	500,000	
사무비	통신비	1,100,000	1,500,000	400,000	
	소모품비	500,000	500,000	0	
	여비	500,000	500,000	0	
	우편비 등	500,000	500,000	0	
	홈페이지	1,000,000	3,000,000	2,000,000	
	소 계	3,600,000	6,000,000	2,400,000	
사무실	사무국 급여	20,000,000	20,000,000	0	
	사무실 운영비	1,500,000	2,000,000	500,000	
	소 계	21,500,000	22,000,000	500,000	
사업비	청소년예술제운영비	6,900,000	6,900,000	0	
	부산예술제운영비	17,500,000	17,400,000	0	
	워크숍운영비	5,000,000	5,000,000	0	
	건축탐방지원	7,500,000	7,500,000	0	
	부산예총	2,500,000	2,500,000	0	기획행사
	60주년기념행사	45,000,000	0	- 45,000,000	삭제
	소 계	84,400,000	39,300,000	- 45,000,000	
기타	경조사비	3,000,000	4,000,000	1,000,000	
	본회회비	4,464,000	3,924,000	- 540,000	
	예총회비 등	1,500,000	1,800,000	300,000	
	예비비	1,036,000	1,576,000	540,000	
	소 계	10,000,000	11,300,000	1,300,000	
총 계		150,000,000	110,600,000	- 39,400,000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서

<수입부>

관		2022	2023	증감액	비고
항	목	수입예산액 (1)	수입예산액 (2)	(2)-(1)	
이월금		3,021,110	5,620,178	2,599,068	
시지원금	시지원금	22,000,000	12,000,000	- 10,000,000	
	소 계	22,000,000	12,000,000	- 10,000,000	
기타	접수비	14,900,000	17,300,000	2,400,000	
	특별후원금	10,000,000	15,000,000	5,000,000	
	이자 등	78,890	79,822	932	
	소 계	24,978,890	32,379,822	7,400,932	
총 계		50,000,000	50,000,000	0	

<지출부>

관		2022	2023	증감액	비고
항	목	지출예산액 (1)	지출예산액 (2)	(2)-(1)	
시상금	일반공모	18,000,000	18,000,000	0	
	완공건축	1,000,000	2,000,000	1,000,000	
	소 계	19,000,000	20,000,000	1,000,000	
대전 준비금	운영위원회	1,400,000	1,200,000	- 200,000	
	소 계	1,400,000	1,200,000	- 200,000	
행사비	통번역비	2,000,000	2,000,000	0	
	심사비	4,200,000	4,200,000	0	
	초청비	1,000,000	500,000	- 500,000	
	인쇄비	1,000,000	2,000,000	1,000,000	
	우편비 등	500,000	700,000	200,000	
	시상식	400,000	400,000	0	
	전시장관리	1,000,000	500,000	- 500,000	
	인건비	1,500,000	500,000	- 1,000,000	
	영상관련	7,000,000	7,000,000	0	
	작품집제작	8,000,000	8,000,000	0	
	소 계	26,600,000	25,800,000	- 800,000	
기타	기타경비	2,000,000	2,000,000	0	
	예비비	1,000,000	1,000,000	0	
	소 계	3,000,000	3,000,000	0	
총 계		50,000,000	50,000,000	0	

제4호의안

제31대 회장 추대의 건

P.49 부록 VI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참조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감사 1인 선출의 건
P.57 부록 VIII 부산건축가회 선거관리규정 참조

제6호의안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2023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정 기 총 회

ARC

사단법인

건축문화연구센터

Architecture Cultural Research Center



(사)건축문화연구센터
2023 정기총회
부의안건

감사보고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별첨 부산건축가회 후원금 내역 (배당수익)

제2호의안 2023년도 운영(안) 승인의 건

감사보고

2022년도 감사보고

-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감 사 : 오철호, 이채근
- 내 용 : 2022 건축문화연구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예산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감사
- 종합의견 : 2022년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 건축문화연구센터의 정관 제 규정을 준수
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기장 내역과 현금 보관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음.

감사소견

1. 2022년도 건축문화연구센터의 일반회계수입은 자본금 배당수익 및 2021년도 이월금을 포함
하여 총 59,388,377원이며, 그 중 44,000,000원은 부산건축가회에 후원하였으며, 운영비,
세금,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10,577원으로 2023년 차기사업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 건축문화연구센터 일반예산 농협 계좌 외 미래에셋 계좌는 CMA 및 투자 관련 입·출금 계
좌(외환)로 변동성 자산이기에 일반회계에서 제하기로 했으며, 미래에셋 계좌의 2021년도
이월금 및 2022년도 잔액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자본금 300,000,000원은 ‘미래에셋대우 Wrap형 ETF(법인)위탁(3억)’ 투자를 통해 자본
금 배당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운용 중인 특별회계(구)한국유리부지 국제아이디어 공모전)는 그 운용 목적이 달성되
었으므로, 차기 이월금 1,341원은 일반회계로 이관 시킬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자본금 이자수익외의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과 외주 용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향
후 부산건축가회와 협력하여 서로 상생하며,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 및 진정한 건축인을 위
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2023년 1월 17일

감 사 : 오 철 호 (인)

감 사 : 이 채 근 (인)

제1호의안

2022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22년도 결 산 총 괄 표

자 2022. 01. 01.

지 2022. 12. 31.

일반회계 총괄표

수입부		지출부		비고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21년도 이월금	44,379,740	운영비	885,400	
사업	0	세금	13,488,900	
ETF	11,842,732	후원금	44,000,000	
기타	3,165,905	기타	1,003,500	
		지출합계	59,377,800	
		차기이월금	10,577	
총계	59,388,377	총계	59,388,377	
2021년도 수입결산액	113,804,860	2021년도 지출결산액	69,425,120	44,379,740

특별회계 총괄표

수입부		지출부		비고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21년도 이월금	0	인건비	0	
용역비	0	운영비	0	
기타	1,341	회의비	0	
		심사비	0	
		기타	0	
		지출합계	0	
		차기이월금	1,341	
총계	1,341	총계	1,341	
2021년도 수입결산액	0	2021년도 지출결산액	0	0

제2회의안

2023년도 운영(안) 승인의 건

- 기존 투자금 300,000,000원
- 기존 투자 상품 GLOBAL X SUPER DIVIDEND ETF (미래에셋증권)
- 운용 관련 제1차 회의
 - 일 시 2022. 9. 21.(수) 오전 8시
 - 장 소 호메르스 호텔 2층
 - 회의내용
 - 분산 투자 제안
 - 투자 포트폴리오 제안서 (투자금 1:1:1)
S&P500 커버드콜 ETF / S&P 고배당 저변동 ETF / 미국 10년이상 고배당 ETF
 - 검토 후 결정
- 운용 관련 제2차 회의
 - 일 시 2022. 9. 28.(수) 오후 2시
 - 장 소 경동제이드 상가 2층
 - 회의내용
 - 기존 상품 유지하고, 배당금 높은 순으로 상품 투자 (1:1:1)
 - 금리 인상에 따른 제1금융권 예치 등
 - 기존 상품 유지
- 투자 현황
 - 기존 투자 상품 유지 GLOBAL X SUPER DIVIDEND ETF
 - 2022. 10. 31. GLOBAL X SUPER DIVIDEND ETF 일부 매도
 - 2022. 11. 1. S&P 고배당 저변동 ETF 매수 (\$39.74)
 - 2022. 11. 1. 12. 5.S&P500 커버드콜 ETF 매수
 - 2022. 11. 30. S&P 고배당 저변동 ETF 매도 (\$44.87)
 - 2022. 12. 13. 맥쿼리한국인프라 매수

부산건축가회 후원금 내역 (배당수익)

연도	후원액			비고
	배당수익	기타	합계	
2017년	6,000,000	0	6,000,000	
2018년	10,000,000	0	10,000,000	
2019년	6,000,000	0	6,000,000	
2020년	8,000,000	0	8,000,000	
2021년	6,000,000	0	6,000,000	
2022년	12,000,000	30,000,000	42,000,000	기타 2021 공모전
총계	48,000,000	30,000,000	78,000,000	

제16회 부산건축상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의 발전과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건축에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부산지역 건축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건축적 세계를 피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축 및 도시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로상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

수상자	김정기	경동건설㈜
	박정삼	백송그룹
	장복만	(주)동원개발
	김청룡	(주)협성건설
	정한식	(주)우성종합건설
	채창호	(주)대성문
	소태수	(주)건양산업개발

올해의 건축가상

건축가로서 부산지역에서 추구해온 건축적 과정과 건축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와 새로운 방향 시사 등 건축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에 대하여 시상

수상자	견진현	동서대학교
-----	-----	-------

신인건축상

유능한 젊은 건축가의 발굴,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창작, 연구, 교육 및 사회지도 등 광범위한 건축 활동 중 특정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작품, 성취, 공적,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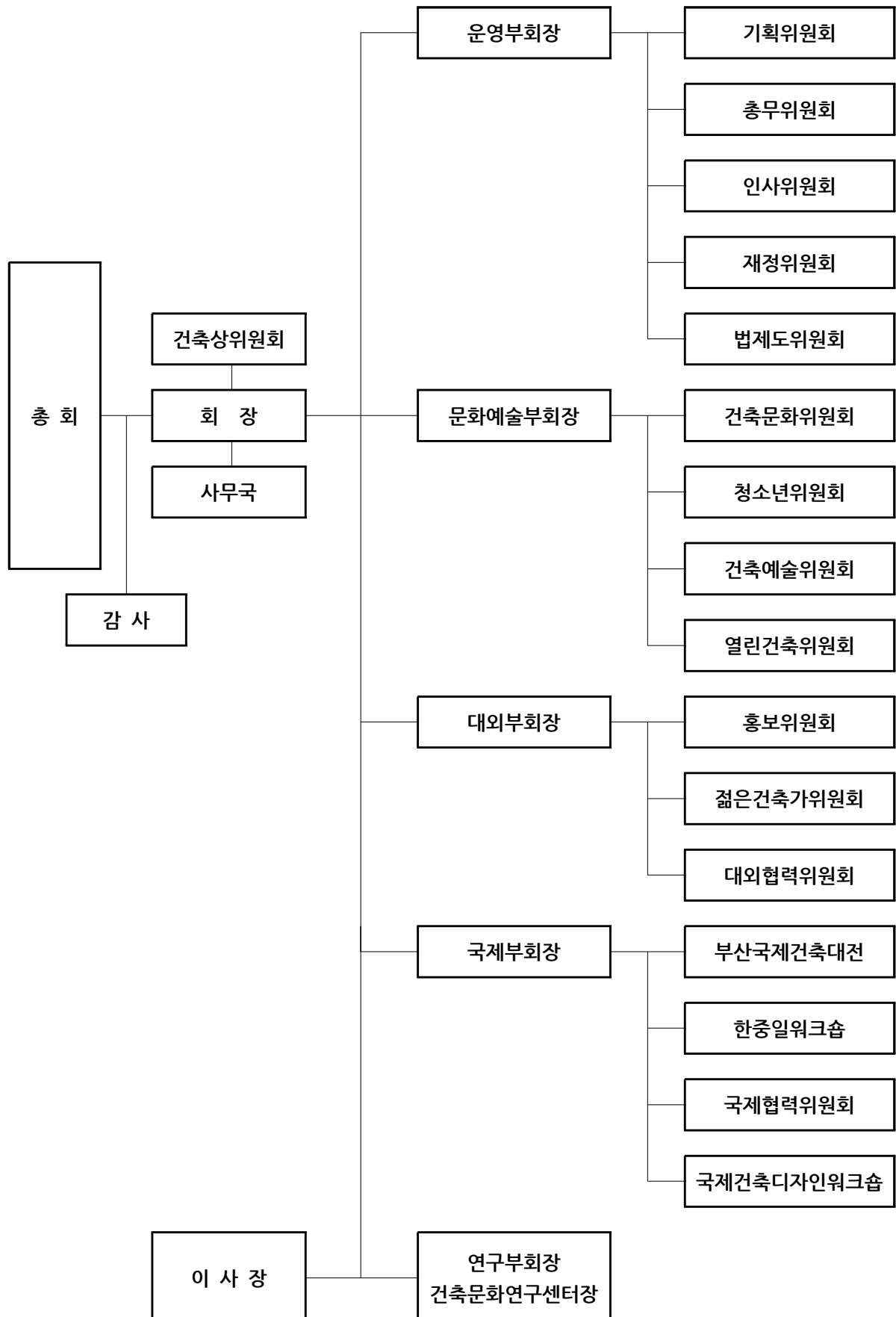
수상자	최준석	건축사사무소 지이엠(주)
-----	-----	---------------

부록 I 역대회장단

	회 기	회 장	부회장	기 획(총 무)	감 사
초대	1962 ~ 1963	故 김택진		故 김규태	故 허선행
2대	1964 ~ 1965	故 이종수		故 김규태	故 허선행
3대	1966 ~ 1967	故 이종수		故 김규태	故 허선행
4대	1968 ~ 1969	故 신옥강		임홍기	故 허선행
5대	1970 ~ 1971	故 장기수		허경원	故 허선행
6대	1972 ~ 1973	故 장기수		허경원	故 허선행
7대	1974 ~ 1975	故 강석근		한병우	故 허선행
8대	1976 ~ 1977	故 강석근		한병우	故 허선행
9대	1978 ~ 1979	임홍기		반미태	故 허선행
10대	1980 ~ 1981	임홍기		반미태	故 허선행
11대	1982 ~ 1983	허경원	반미태	류광홍	故 허선행
12대	1984 ~ 1985	故 김규태	반미태	故 안일성	故 허선행
13대	1986 ~ 1987	성훈섭	반미태	장상진	故 허선행
14대	1988 ~ 1989	반미태	장상진	지호경	故 조성기
15대	1990 ~ 1991	반미태	장상진	김동회	故 조성기
16대	1992 ~ 1993	박춘근	류광홍 장상진	문용규	이학우
17대	1994 ~ 1995	박춘근	류광홍 장상진	이추복	이학우
18대	1996 ~ 1997	한병우	장상진 문용규	박재평	이학우
19대	1998 ~ 1999	이추복	조흥정 우동주	허동윤	이학우
20대	2000 ~ 2001	장상진	문용규 정량부	강대화	이학우
21대	2002 ~ 2003	문용규	지호경 정량부	전진오	이학우
22대	2004 ~ 2005	지호경	정태복 故 류호섭	신호국	류종우
23대	2006 ~ 2007	강대화	정성규 윤영식	신호국	류종우
24대	2008 ~ 2009	허동윤	신호국 조승구	이종기	류종우
25대	2010 ~ 2011	허동윤	신호국 전채휘	강기표	류종우
26대	2012 ~ 2013	신호국	강기표 유재우	조서영	이상준
27대	2014 ~ 2015	신호국	손숙희 오철호 조서영 조승구	김두진	장상진 서귀자
28대	2016 ~ 2018	손숙희	조승구 오철호 조서영 김두진 김정기	김명건	강대화 강기표
29대	2019 ~ 2020	조승구	조서영 오철호 송대호 김두진 이봉두 이병욱	박희영	김정기 이채근
30대	2021 ~ 2022	조서영	이봉두 강주연 김두진 이장민 이병욱	표응석 박미경	이채근 오철호

부록 II 조직도

제30대(2021-2022) 조직도



한국건축가협회 정관

제1장 總 則

제1조(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건축가양성 및 권익보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본회는 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지방에 지역건축가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외국에 지역건축가회를 둘 수 있다.
- 지역건축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건축가 양성 및 복지 증진
- 건축가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건축가 계속 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 건축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 건축에 관한 연구 및 도서발간
- 건축과 관련 산업 간의 조율
-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대 사회 홍보 및 참여
-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및 건축 관련 행사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 員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REGULAR MEMBER/KIA), 준회원(ASSOCIATE MEMBER/AKIA), 학생회원(STUDENT MEMBER/SKIA), 명예회원(HONORARY MEMBER/HKIA), 후원회원(CONTRIBUTION MEMBER/CKIA)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정회원(KIA)
 - 가. 건축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건축설계 및 교육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가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
- 준회원(AKIA)
 -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에서 수습 과정에 있는 자
- 학생회원(SKIA)
 -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대학에서 이를 전공하고 있는 자

- 명예회원(HKIA)
- 본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 후원회원(CKIA)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입회)

-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나. 정관 제11조 2항 (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발효와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 상기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에 해를 끼칠 때
- 다.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제 명
- 나. 권리 정지
- 다. 견 책

제3장 任員, 職員, 部署 및 단체가입 등

제12조(임 원)

- (임원의 종류 및 정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1명
- 나. 수석부회장 1명
- 다. 부 회 장 6명
- 라. 이 사 50명(회장단 포함) 이내
- 마. 감 사 2명
-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 회장 유고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되 연구, 사업, 지회, 국제, 대외협력, 여성담당으로 구분한다.
-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제외)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임원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단체의 설립과 가입 등)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회사 기타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단체에 가입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건축문화와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는 명예건축가 (FELLOW MEMBER/FKIA)로 추대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비회원의 경우는 특별명예회원(HONORARY FELLOW MEMBER/HFKIA)로 한다.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명예회장이라 칭하며, 당연직 명예건축가로 추대 된다.
- 명예건축가는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명예건축가의 추대 및 명예건축가회의 구성은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업무분장)

- (부서의 종류) 본회는 본 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부서를 두고 부회장이 이를 각각 관장한다.
- 가. 운영: 본 회의 일반사무, 재무, 섭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나. 연구: 건축, 창작 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 다. 사업: 본 회의 홍보, 정보관리 및 신규사업, 특별회계사업, 특별회비 및 사업 수입금에 관한 업무
- 라. 지회: 본 회와의 상호 협력 및 지회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
- 마. 국제: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국제 관계 교류 업무
- 바. 대외협력: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단체 협력·교류 및 공공사업 관련 업무
- 사. 여성: 여성건축가들의 권익신장과 창작활동,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입회 자격심사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 가. 연구부서에서는 건축, 창작활동의 분야별 직능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 나. 사업부서에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 종류, 명칭, 소관업무, 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

- (사무국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장 등)
- 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나.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 라.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會 議

제19조(회의의 종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 총 회
- 이사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 정관 변경
- 기본재산 설치 및 처분
- 법인의 해산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정족수)

- 1.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1/4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2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 및 지회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필요시 회장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회의 소집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5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 위원회의 운영
-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제27조(이사회회의 정족수)

이사회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財 政

제28조(재 산)

-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하거나 사권을설정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본 회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 회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9조(세 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 회 비
- 입회비
- 보조금
- 특별회비
- 사업수입금
- 기타수입금

제30조(특별회계)

본 회의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6장 補 則

제32조(해 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정관 변경)

-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 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6조(규 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 지역건축가회(地會)의 조직과 운영
- 사무국 조직과 운영
- 회의 소집과 운영
- 기타 이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표의 파견)

본 회와 관련된 협회 혹은 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附 則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결정 처분은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명예이사는 제16조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간주한다.

附 則

1. (경과조치)

197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명예이사 제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반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회칙	1957년	1월	17일	제정
회칙	1960년	9월	29일	개정
정관	1962년	2월	3일	제정
	1963년	2월	2일	개정
	1964년	2월	1일	개정
	1966년	3월	5일	개정
	1967년	3월	8일	개정
	1968년	3월	9일	개정
	1970년	1월	31일	개정
	1973년	1월	20일	개정
	1976년	2월	7일	개정
	1977년	3월	5일	개정
	1978년	2월	14일	개정
	1979년	2월	24일	개정
	1980년	2월	23일	개정
	1981년	2월	24일	개정
	1985년	2월	27일	개정
	1988년	2월	27일	개정
	1990년	2월	23일	개정
	1993년	2월	26일	개정
	1998년	2월	16일	개정
	1999년	2월	24일	개정
	2002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2월	21일	개정
	2005년	11월	24일	개정
	2006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2011년	3월	16일	개정
	2012년	4월	13일	개정
	2014년	4월	14일	개정
	2016년	4월	25일	개정
	2020년	5월	28일	개정
	2021년	3월	18일	개정

부록 VI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1999년 3월 29일 제정
2001년 3월 개정
2008년 2월 개정
2010년 2월 18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4년 2월 25일 개정
2016년 4월 4일 개정
2017년 2월 24일 개정
2019년 2월 27일 개정
2021년 3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본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산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2. 건축가의 활동을 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4. 부산건축대전의 주관
5. 건축에 관한 강연회, 전시회 및 견학회 등 개최
6. 건축에 관한 자료의 출판
7. 건축에 관한 교육 및 연구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 협회 정관에 의한다.

제6조 (회원의 입회·탈퇴·권리·의무·징계)

본회의 회원관련의 모든 사항은 본 협회 정관에 의한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

1. (임원의 종류 및 직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1인
 - 나. 수석부회장 1인
 - 다. 부 회 장 약간 명
 - 라. 이 사 25인 이내(회장단 포함)
 - 마. 감 사 2인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3. (부 회 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 연구,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2. 부회장 및 이사(수석부회장, 감사 제외)는 회장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하며 회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임원 선출 방법과 시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사무국 및 유급직원)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소를 개설하여 유급직원을 두어 본회 제반 업무처리를 전담케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개최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 운영규칙의 개정
5. 자산의 처분 등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 1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1/4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15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사 결정)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써 이를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위원의 선임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 5 장 재 정

제20조 (수 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특별회비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제21조 (자 산)

1. 본회는 현금자산 및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할 수 있다.
2. 본회의 적립자산을 처분 또는 설정 등을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특별회계)

본회는 부산건축대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 (운영규칙의 변경)

본회의 운영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본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 (지 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1. 부산건축가회 운영지침
2. 부산국제건축대전 운영지침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본 운영규칙은 1999. 3. 29.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운영규칙 시행일 이전의 지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 운영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운영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운영규칙은 2001. 3.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운영규칙은 2010년 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운영규칙은 2011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운영규칙은 2014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운영규칙은 2017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운영지침

제 1 장 목 적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운영규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2조 (이사회)

1. 회장은 운영규칙 제12조에 의한 이사회를 연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제5조 제1항의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이사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의안 및 회의록)

1. 정기 이사회 의안은 회장이 통괄하여 제출한다.
2. 사무국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회의 성립 일시
 - 나. 회의 장소
 - 다. 출석한 임원 성명
 - 라. 보고사항
 - 마. 토의사항
 - 바. 결의사항
 - 사. 표결과 가결의 결과
 - 아. 폐회 시간
3. 회의록은 회장단의 회람을 받은 후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이사의 권한 위임)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회장에게 문서로서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문서 위임은 당해 이사회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3 장 위 원 회

제5조 (위원회 및 부설기관)

① 위원회

1. (기획위원회) 이사회 진행, 운영, 사업기획 조정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가. 본 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획업무
 - 나. 매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수립 조정
 - 다. 각 분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업무의 협력 조정
2. (홍보위원회) 본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의 대외홍보, 대변인, 기자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인사위원회) 본회의 신입회원추천 및 심사, 회원관리, 회원 회비관리,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재정위원회) 본 회의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업무 및 기금관리 조성, 예산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별도법인 건축문화연구센터의 적금관리 및 예산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5. (국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 국제사업관련 업무, 국내건축계교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관장하며 건축대전 및 한중일워크숍 운영위원회를 지원한다.
6. (대외협력위원회) 부산3단체연합(FIBU) 등 국내건축계교류, 등록원, 인증원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관장하며 각 위원회의 대외협력업무를 지원한다.

7. (건축상위원회) 협회상(올해의 건축가상, 신인건축가상, 공로건축가상)과 특별상, 장학생 선발 등 건축상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한중일 초대건축가전, 신인건축가전, 회원작품전 등을 기획 전시한다.
8. (건축문화위원회) 회원교류, 건축투어, 건축문화해설사양성,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9. (열린건축위원회) 부산건축가지, 홍보지, 논설업무 및 기획출판 사업 및 매년 부산의 건축정책, 정책논단, 열린건축마당 등을 관장한다.
10. (법제도위원회) 현행제도, 대안, 각종 건축 관련 법규 및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11. (젊은건축가위원회) 신인건축가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매년 5명 이상의 젊은 건축가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관장한다.
12. (건축예술위원회) 부산예술제에 참여하여 부산국제건축도시사진전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13. (청소년위원회) 부산청소년예술제에 참여하여 건축상상마당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

1. (부산국제건축대전) 별도 운영지침을 둔다.
2. (워크숍) 본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워크숍의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워크숍별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

1. (건축문화교육원)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교육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의 구성은 회원공고를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소속을 정한다.
3. 제5조 ①항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를 겸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소관업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8조 (회 의)

위원장은 필요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의 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 영)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1.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소위원회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12조 (업무처리기준)

본회의 업무처리는 본회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사항 이외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직 원)

사무국에는 아래와 같은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 가. 사무국장 1인
- 나. 직원 약간 명

제14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15조 (업 무)

1. 업무
 - 가. 회원관리
 - 나. 각종 문서의 수발 및 관리
 - 다. 자료 및 도서관리
 - 라. 회의 관리
 - 마. 운영 및 시행 계획의 작성 조정
 - 바. 회지 및 간행물 발간
 - 사. 각 위원회 보조
 - 아. 기타
2. 경리
 - 가. 경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나. 재산 및 비품관리
 - 다. 예산 집행 및 결산

제16조 (결 재)

본회의 모든 집행문서는 기획이사, 수석부회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문서보관)

문서의 보존 기간은 국가기관 규정에 준한다. (주문부서 소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8조 (회의록)

각급 회의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9조 (문서열람)

본회의 임원 외에는 회의록 등 제반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제20조 (비치문서)

사무국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1. 업무에 관한 문서
 - 가. 회원명부 대장
 - 나. 국내·외 문서 수발대장
 - 다. 국내·외 문서 수발철
 - 라. 지역건축가회 왕복 서신철
 - 마. 인장 사용 대장
 - 바. 신분증 발급 대장
 - 사.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아. 회의록
 - 자. 도서 목록
2. 경리에 관한 문서
 - 가. 금전출납부
 - 나. 원부
 - 다. 재산 목록
 - 라. 회비 납부 대장
 - 마. 비품 대장
 - 바. 경리에 관한 결제 대장
3. 편찬에 관한 문서
 - 가. 자료 목록
 - 나. 필름관리 대장

제21조 (수입 및 지출)

1. 수입금은 전표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장한 후 사무국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2. 지출금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기획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담당부회장 및 회장에게 보고한다. 단,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거 작성된 전표 및 장부는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한다.
3.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 월 항목별 총괄표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기획위원장에게 결재를 받고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구 매)

물품 구입으로 인한 지출에 있어서 지출액 1십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2개 처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처가 유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수입금 예치)

수입금은 본회 명의로 예금한다.

제24조 (출장여비)

본회의 용무로 출장하는 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는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5조 (인 장)

본회 인장은 아래와 같이 2종으로 구분한다.

1. 본회 인장
2. 회장 직인

제26조 (인사서류)

신규 채용하는 사무국 직원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사 진
3. 신원보증인 2인 또는 신용보증증서
4. 졸업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

제27조 (인장의 보관)

본회 인장, 회장 직인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28조 (인사서류보관)

제26조의 서류는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29조 (직원의 보수)

1.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2. 사무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근무연한에 월평균 급여액을(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 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표 창)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얻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32조 (규정 준수 의무)

1. 직원은 정관 및 본 장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원은 직무 수행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 명령이 법령,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에 위배됨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34조 (결 근)

직원의 결근은 기획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휴 가)

직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회비 및 경조

제36조 (회 비)

회원의 회비 징수는 월정회비와 찬조회비로 하며 월정회비는 종신회비로 할 수 있고 장기 선납인 경우는 그 금리를 감한다. 단, 종신 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한다.

제37조 (회비의 납입방법)

회원은 매 연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는 월납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경조금)

다음과 같은 경우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원의 사망
2. 회원 및 직원의 경조(직계존비속)
3. 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조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단, 지급액은 관례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운영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4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선 거 관 리 규 정

1998년 1월 13일 제정

2008년 1월 25일 개정

2015년 1월 6일 개정

2017년 1월 2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임원(수석부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공정한 선거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하여 3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제6조 (위원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당해 연도의 정기총회 개최 25일 전에 선임되어 총회 폐회 후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는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2.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8조 (선출) 선출은 총회당일 총회장 내에서 선출한다.

제9조 (투표) 투표는 총회당일 총회장 내에서 실시한다.

제10조 (개표) 개표는 총회당일 총회장 내에서 실시한다.

제11조 (투표 및 참관인)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이 한다.

제12조 (투표 용지) 투표용지는 인정양식에 의하여 본회 직인이 날인된 투표지만이 유효하다.

제13조 (투표 무효)

후보자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이 유효하고 성명이 틀리거나 1인 이외 성명기재 또는 부호 등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로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의한다.

제14조 (단일 후보)

단일후보일 경우는 총회 참석인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며 당선자가 없는 경우 총회장에서 선출한다.

제15조 (당선)

총회 의장은 투표 결과에 의하여 선출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폐회 전까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칙)

본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산건축상 규정

2007년 8월 신인건축가상으로 제정
2011년 8월 23일 부산건축가상으로 개정
2018년 2월 27일 부산건축상으로 개정

제1조 (목 적)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이하 “본회”라한다)는 건축문화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고, 부산지역의 창의적이고 역량이 있는 건축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건축적 세계를 피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 건축 및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1 (부산건축상의 구분)

1. 공로상 : 본회의 발전과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2. 올해의 건축가상 : 건축가로서 부산지역에서 추구해온 건축적 과정과 건축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와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등 건축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3. 신인건축가상 : 유능한 젊은 건축가의 발굴,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창작, 연구, 교육 및 사회지도 등 광범위한 건축 활동 중 어떤 특정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작품, 성취, 공적,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제2조 (부산건축상 운영위원회)

1. 부산건축상의 운영을 총괄할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건축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수상 건축가의 적격심사, 수상분야, 수상대상, 수상시기, 선정방법, 시상내용 등을 정립하고 조정할 의무를 갖는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6명 내외로 하여 본회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회)

1.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내,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당해 년으로 한다.

제4조 (수상 자격 및 심사 작품의 선정 기준)

1. 공로상은 건축문화 및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2. 올해의 건축가상은 본회 회원으로서 건축문화에 공헌한 건축가로 하며 매년 개인에 대하여 시상한다.
3. 신인건축가상은 본회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며,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부산의 건축문화에 공헌한 자로 하며 매년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4. 신인건축가상의 후보 건축가가 건축사사무소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로부터 심사대상 작품이 개인 및 단체의 주된 성과물이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올해의 건축가(상) 및 신인건축가(상) 심사대상 작품은 완공작품 또는 공표되었거나 발표된 저작물을 원칙으로 한다.
6. 올해의 건축가(상) 및 신인건축가(상) 수상 건축가는 본회의 전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작품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의 작품을 전시할 의무를 갖는다.
7. 신인건축가(상) 수상자의 자격은 시상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로 한다.

제5조 (수상 후보 건축가의 추천)

1.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로상 후보자를 3인 이내로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건축가(상) 및 신인건축가(상)의 후보 건축가를 5인 이내로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동의 하에서 후보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대신하여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자료의 제출)

1. 공로상 후보자는 다음의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 가) 이력서
 - 나) 공적 조서
 - 다) 공적 관련 자료
2. 올해의 건축가(상) 및 신인건축가(상)의 후보 건축가는 다음의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 가) 이력서
 - 나) 3개 이내의 완공 작품의 사진 및 작품 도서 자료 또는 저작물
 - 다) 포트폴리오: 20컷 이내의 PPT 파일
 - 라) 소속 단체 대표의 확인서 (필요시)

제7조 (수상 건축가의 선정과 확정절차)

1.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로상 후보자에 대하여 건축문화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여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선정사유서와 함께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에서는 올해의 건축가(상) 및 신인건축가(상)로 추천된 후보 건축가의 작품을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건축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선정사유서와 함께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은 본회 회장에게 수상자의 선정결과를 선정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최소한 시상일 4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본 부산건축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8조 (시상 등)

1. 각 상의 수상자에 대한 포상은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상장 혹은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기념품 또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2. 본 상의 포상, 전시비용 지원, 심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3. 본 상의 포상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9조 (시상 및 전시)

1. 본 상은 선정연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을 하며, 전시는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 기간 중에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기 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07. 7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3.

1. (시행일) 본 규정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7.

1. (시행일) 본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